

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서울特別市社會教育協議會設置條例等一部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1時 12分)

○委員長代理 金相復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社會教育協議會設置條例等一部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이 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있으면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중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社會教育協議會設置條例等一部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없으시죠?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特別市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特別市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의 개정) 서울特別市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학무국장”을 “사회교육체육국장”으로 한다.

제2조(서울特別市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의 개정) 서울特別市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각교육장”을 “하급교육청 교육장”으로 하고, 제2조,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중 “구정화위원회”를 “청정화위원회”로 하며 제4조제2항중 “학무국장”을 “사회교육체육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을

“초등장학과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중등장학과장”으로, “체육교육과장”을 “학교보건과장”으로, “서울특별시장경찰국 보안과장”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방범부 방범지도과장”으로, “보건사회국 보건위생과장”을 “서울특별시보건사회국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학무과장”을 “학무국장”으로 “당해교육청소속”을 “당해교육청교육장소속”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간사 1인과”를 “간사와”로 한다.

제3조(서울特別市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서울特別市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서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特別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特別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학무국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동조 제4항중 “학무과장”을 “학무국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特別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의 개정) 서울特別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관리대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1時 13分)

○委員長代理 金相復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社會教育體育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教育體育局長 鄭鶴謨 議案 第5項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提案經緯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改正事由는 市立圖書館의 使用料에 대해서 圖書館振興法 第28條 同法施行令 第30條 및 同法施行令 附則 第7條에 의거 改正하고자 하는 것이 主 改正事由가 되겠습니다.